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배출권 시세조작 행위 금지 규정 신설 등 〉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29호)

2025. 8.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배출권 시세 조작 행위 금지 규정 신설	3
2. 배출권거래제 시세조작금지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7
3.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관련 조항 신설	15
4. 배출권 거래소 및 시장 참여자 감독 권한 강화	18
5. 검증기관 및 검증협회 감독 강화 등	21
6. 과징금 외 배출권의 제출 의무 명시	26
7. 부칙	30
※ 참고자료	27
1. 배출권거래제 제도 변화	32
2. 국내 제3차 및 4차 할당계획 수립 일정 계획(안)	33

I. 제안경위

2025년 2월 21일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 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탄소가격보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감축기술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배출권 가격이 낮아 기업의 감축투자 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는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배출권 시장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는 취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를 수립·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적 근거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기업의 배출권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밖에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검증협회 관리를 개선하는 등 입법미비

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Ⅲ. 검토의견

1. 배출권 시세 조작 행위 금지 규정 신설

개정안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② (생략) <u><신설></u>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
<u>③</u> (생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 시장참여자가 배출권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배출권 시장참여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게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누구든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배출권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거래를 억제하여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EU ETS의 경우 시세조작에 대해 MAR(Market Abuse Regulation)에 따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유럽증권시장국(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협조 하에 국가별 감독기관(NCA: National Competent Authority)이 이를 감독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ARB: Air Resources Board)가 거래조작을 감시하고 위반 시 거래 자격 박탈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유럽연합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감독 내용 비교]

구분	유럽연합(EU)	미국 캘리포니아 주
규제 기관	유럽증권시장국(ESMA) + 국가별 감독기관(NCA)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관련 법률	시장남용규정(MAR)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Regulation)
감독 내용	탄소 시장에서의 시세 조작 및 시장 남용 행위 감시	배출권 거래의 무결성 유지 및 거래 조작 방지
위반 시 제재	시장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권한 보유	위반 시 거래 자격 박탈,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자료: 환경부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9조제3항 중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이라는 문구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¹⁾를 참고하여 “제삼자에게”라는 자구를 추가하여 타인을 위한 시세 변동 등의 행위도 금지되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배출권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어 금지 행위를 억제하려는 수단이 미비하므로,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²⁾에 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

라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2. 배출권거래제 시세조작금지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①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부당한 시세 조작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22조의3제6항제7호마목), ② 시장참여자의 예탁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안 제22조의3제9항),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해산,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금융회사가 시장참여자에게 예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22조의3제10항), ④ 배출권 거래 예탁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예탁금 지급 채무 소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7. ----- ----- ----- -----

현행	개정안
가. ~ 라. (생략) <u><신설></u>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u> <u>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u> <u>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u> <u>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u> <u>부당한 이익을 얻게할 목</u> <u>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u> <u>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u> <u>위</u>
마. (생략) ⑦·⑧ (생략) <u><신설></u>	바. (현행 마목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⑨ <u>누구든지 제6항제6호에 따</u> <u>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u> <u>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상계(相</u> <u>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u> <u>하지 못하며, 해당 예탁금을 예</u> <u>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u> <u>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도로</u> <u>고시한 경우 외에는 증권금융</u> <u>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u> <u>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u> <u>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⑩ <u>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u> <u>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u>
<u><신설></u>	

현행	개정안
	<u>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u> <u>예탁금을 그 시장 참여자에게</u> <u>우선 지급하여야 한다.</u> 1. <u>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u> <u>취소된 경우</u> 2. <u>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해산</u> <u>결의를 한 경우</u> 3. <u>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파산</u> <u>선고를 받은 경우</u> 4.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u> <u>관한 법률</u>」 제6조제1항제1호 의 투자매매업 또는 제6조제1 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폐지의 승인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u>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u> <u>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u> <u>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u> <u>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금융거
<u><신 설></u>	<u>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u>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⑨·⑩ (생략)</u>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⑫ 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에 따른 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⑬ 제10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와 위탁자에 대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⑭·⑮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6항제7호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내부정보 이용, 이익보장,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무단거래 등 불건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경우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3)에 따라 투자중개업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②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제1항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 외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예치금융투자업자, 예치기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관련 정보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예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지급할 때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자 등에 대한 투자자예탁금의 별도 예치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배출권 기반 금융상품에 대한 시세조작을 금지하고, 예탁금에 대한 상계·압류 금지, 예치기관에 직접 지급 근거 마련, 예탁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처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 배출권 시장의 금융화 기반 조성, 투자자 자산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투자자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투자자정보의 분리 보관
4. 투자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투자자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투자자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제5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와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⑪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⑫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의 인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관리,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첫째, 안 제22조의3제10항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⁴⁾할 때 예탁금 지급 우선순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위법령으로 이의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2조의3제11항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제공 범위 및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투자자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및 분리보관, 투자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이용기간 경과 시 투자자정보의 삭제 등에 대한 사항으로 이를 한정하고 방법과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⑤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투자자 및 예치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총액이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② 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이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나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9항⁵⁾에 따라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정보 범위, 암호화 등 처리방법, 분리보관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셋째, 안 제22조의3제9항은 시장참여자의 예탁금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규정임에도 형벌이나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투자자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투자자정보의 분리 보관
4. 투자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투자자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투자자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관련 조항 신설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의 배출권을 등록할 경우 거래계정 명義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무관청이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 급증으로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경우 거래계정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②·③ (생략) <u><신설></u>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 ----- ----- ----- <u>. 다만,</u> <u>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배출권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거래계정의 명義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 이외 시장

현행	개정안
	<u>참여자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단기간에 해당시장 참여자의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불건전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계정 등록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u>

현행법 제20조⁶⁾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최대 수량을 설정할 수 있으며, 외국 법인이나 개인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에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은 배출권의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거래계정 등록 요구 거절 등 공적 관리 수단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중개회사가 위탁자의 배출권을 등록하는 경우 명의와 관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③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계없이 위탁자 계정으로 간주하고, 단기간 보유량 급증 등 시장교란 우려시 주무관청이 계정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위탁매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이 과도하게 저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EU ETS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거래를 보장하지만 시장안정성 저해 우려, 자금세탁 위험 존재 등의 사유로 등록을 거절할 수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시장 교란 가능성, 과거 불공정 거래 이력 등의 사유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거래계정 등록을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 시장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유럽연합 및 미국 캘리포니아의 등록 거절사유 비교표]

구분	유럽연합 (EU ETS)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Cap-and-Trade)
계정 등록 기관	각국 국가등록기구(National Registry Administrator)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CARB)
등록 요건	합법적 사업체 여부, 실체적 배출 활동 여부, 식별 가능한 신청자 정보 등	사업체 등록, 배출 활동 또는 거래 목적 명확성, 진실된 정보 제공 등
등록 거절 사유	- 허위 정보 제출 - 제재 이력 존재 - 시장 안정성 저해 우려 - 신원 불확실 또는 자금세탁 위험 존재	-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 - 과거 불공정 거래 이력 - 시장 교란 가능성 - 규정 위반 전력
감독 및 규제 기관	유럽증권시장국(ESMA), 각국 금융감독기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CARB)
불공정 거래 제재 제도	시장남용규정(MAR)에 따라 시세 조작 등 제재	자격 박탈, 과징금 부과, 등록 취소 등

자료: EU ETS Registry 규정, CARB Cap and Trade 등록 지침

4.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

개정안은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감독·검사)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의4(감독·검사) ① ----- ----- ----- <u>참여자</u> <u>와 배출권거래소</u> ----- ----- -----.
②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 ----- ----- -- <u>참여자 및 배출권거래소</u> ---- ----- ----- -----.
③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거래에 관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현행	개정안
<u>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신 설></u> ④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u>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⑤ 그 밖에 시장 <u>참여자</u>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다.</u> ④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 및 <u>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⑤ ----- ----- -----<u>배출권거래중개회사 및 배출권 거래소</u>----- -----. ⑥ -----<u>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u>-----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7)에 따

-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감독·검사)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법 제22조⁸⁾에 따라 설치된 배출권 거래소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개정안은 주무관청이 배출권거래소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및 관련 기관 협조 요청 권한을 신설하여 이상거래 적발 가능성을 제고하며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전문감독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2조의4제3항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¹⁰⁾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조항 위치를 제4항으로 옮기면서 이를 “금융감독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같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감독·검사) ③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5. 검증기관 및 검증협회 감독 강화 등

개정안은 검증기관이나 검증심사원이 업무 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주무관청의 온실가스 검증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 ④ (생략)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 ----- ----- ----- ----- -----제4호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u> <u>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u> <u>수행한 경우</u>

현행	개정안
<u>4.·5.</u> (생략) ⑥ ~ ⑧ (생략) 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 ~ ③ (생략) ④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 또는 제2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략) <u><신설></u> <u>3.·4.</u> (생략) ⑤ (생략)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 ③ (생략) <u><신설></u>	<u>5.·6.</u>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u>----- ----- -----. 1.·2. (현행과 같음) 3. <u>자격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u> <u>4.·5.</u>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3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④ ~ ⑥ (생략)	을 받아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현행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법령 위반 시 주무관청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제24조의3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심사원은 검증기관에 소속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법령 위반시 주무관청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제24조의4에 따라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업무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 수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격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이하 “검증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이미 검증기관 등이 업무정지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검증 업무를 수행한 것은 위반 행위가 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검증기관 등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자격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검증기관 등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부실검증 및 편법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에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검증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무관청의 효과적인 감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9조제8호¹¹⁾에서도 업무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2016.1.27.>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인증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과징금 외 배출권의 제출 의무 명시

개정안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할당대상업체는 과징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미제출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3조(과징금) ① ----- ----- ----- ----- ----- ----- -----. 다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할당대상업체는 과징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양 또는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권의 양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③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3조12)는 주무관청이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배출권 거래제 시행(2015년) 이후 배출권을 미제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는 총 8곳으로, 미제출량은 18만 9,839톤이고, 과징금은 129억 7,626만원이 부과되었음.

[배출권 미제출업체 과징금 부과 현황]

업체명	부과연도 (배출권 종류)	미제출량(톤)	과징금*(만원)	수납여부
서울바이오시스(주)	2016 (KAU15)	1,939	6,997	수납
에이에스에이	2018 (KAU17)	6,645	42,125	수납
(주)광원목재	2018 (KAU17)	25,109	159,173	미수납
대유글로벌	2019 (KAU18)	1,428	9,526	수납
현진소재	2020 (KAU19)	32,597	284,826	미수납
현진소재	2021 (KAU20)	24,993	217,634	미수납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할당대상업체가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② 주무관청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웅진에너지	2022 (KAU21)	91,287	539,725	미수납
HM금속	2022 (KAU21)	5,841	37,620	미수납
합 계		189,839	1,297,626	

자료: 환경부

개정안은 과징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배출권의 제출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과징금으로 의무 이행 책임을 면제하지 않고 배출권 제출 의무까지 병행하여 이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감축 의무 회피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배출권 제출 불이행 시 과태료와 배출권 제출 의무를 병행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패널티 배출권 제출 및 과징금 부과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배출권 제출 불이행시 제재 방식 비교]

구분	대한민국 (K-ETS, 현행법 기준)	유럽연합 (EU ETS)	미국 캘리포니아 (CA Cap-and-Trade)
제재 방식	과징금 부과 (배출권 제출 의무 없음)	과태료 + 배출권 제출 의무 병행	패널티 배출권 제출 + 과징금 가능
금전 제재	부족분 × 이행연도 평균 시장가격의 3배(상한 10만 원/톤)	고정 100유로/톤 (매년 물가 반영 조정)	규정된 정산비율 기준 패널티 적용 (보통 4:1) + 벌칙금 가능
배출권 추가 제출 의무	✗ 없음 (현재 법령상 병행 규정 없음)	✓ 있음 (미제출분은 다음 연도에 반드시 제출)	✓ 있음 (미제출분 × 4배 배출권 추가 제출 의무)
추가 제재	없음 (과징금 납부로 종료)	과태료 미납 시 형사처벌 가능성	향후 배출권 할당 삭감 등 행정 제재 가능
법령/근거	온실가스 배출권법 제33조	EU ETS Directive (Art. 16)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95857

자료: 환경부, EU ETS 및 캘리포니아 자료 취합 후 수정

다만, 안 제33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¹³⁾ 등에서 배출권 미제출분에 해당하는 과징금(1톤당 평균 시장가격의 3배)을 납부함으로써 배출권 제출 의무를 대신한 상황에서 추가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과¹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을 가진 기관의 경우에는 추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4) 개정안과 같이 과징금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배출권도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과징금 납부 의무를 지닌 기업들의 과징금 납부 유인이 낮아질 수 있음.

7. 부칙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부칙안).

[개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은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동안 배출권 거래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당 제도가 제4차 계획기간 시작 시점에 맞춰 시행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제도의 실효성과 연계성, 시행령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다만, 안 제33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할당대상업체는 과징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부족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의무제출 규정이 개정 전 이미 과징금을 부과받았거나 할당이 취소된 사례에 소급 적용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과징금 부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533

참고1

배출권거래제 제도 변화

구 분		1기('15~'17)	2기('18~'20)	3기('21~'25)
운영	할당업체	525개 업체	591개 업체	684개 업체 (現 818개)
	ETS 비중 (커버리지)	67.3%	70.1%	73.5%
	배출허용총량 (연평균)	563백만톤	592백만톤	607.1백만톤
유상 할당	비중	0% (전부 무상)	3%	10%
	업종	-	26개 업종	41개 업종
BM 할당	참여비율	7%	49%	62%
	업종	3개 업종 (정유, 시멘트, 항공)	7개 업종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12개 업종 (석유화학, 철강, 건물, 제지, 목재)
시장	시장 참여	할당대상업체	1기 + 시장조성자('19~)	2기 + 증권사('21~) ※ 시장참여자 추가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중(~'25.2)
	이월 제한	무제한 이월허용	순매도 기준 이월 제한 (순매도량의 3배 이내)	순매도 기준 이월 제한 완화 ('23년 1배→3배) ('24년 3배→5배)
	시장 안정화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16)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18)	최저가격 설정 * KAU21 2회, KAU22-23 각 1회
상쇄	제출한도	10%	10% (해외감축 5%)	5%

참고2

국내 제3차 및 4차 할당계획 수립 일정 계획(안)

※자료: 환경부

구 분	3차 할당계획('21~'25) 수립 일정	4차 할당계획('26~'30) 수립 계획
이해관계자 협의	'20.5~8	'25.2~5
관계기관 의견 조희	'20.8.14~8.24	'25.5
공청회	'20.9.15 / 9.21	
할당위원회 심의	'20.9.25(서면)	'25.6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심의	'20.9.28(서면) ※ 당시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할당계획 수립)	'20.9.29	